

해외예금보험 동향

2007. 8월

● 대만 CDIC, 예금보호 한도 상향 조정

- 대만 예금보험공사(Cent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; 中央存款保險公社 CDIC)는 금융감독관리위원회(金融監督管理委員會)의 승인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재 100만 NT\$(약 2,800만원)에서 150만 NT\$(약 4,300만원)로 인상
 - 이번의 보호한도 인상은 보호한도가 100만 NT\$로 상향조정*된 1987년 이후, 경제규모 확대로 인해 1인당 GDP대비 보호한도 수준**이 하락하였고
 - * 1985년 70만 NT\$에서 1987년 100만 NT\$로 보호한도 상향
 - **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수준이 87년의 6.1배에서 1.9배로 낮아졌고 이는 주요국(미국, 캐나다, 일본 및 한국) 평균치 2.5배에 비해 낮은 수준
 - 1987년 이후 소비자물가(CPI)가 약 45% 상승함으로써 실질보호한도(real value of the coverage amount)가 크게 축소된 데 기인
- 보호한도 인상 과정에서, 보호한도의 상향으로 인한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었으나
 - 대만의 거시경제 상황 및 선진국의 보호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한도의 인상을 결정
- CDIC는 이번의 보호한도 인상으로 인해 예금계좌 기준으로 90% 이상, 부보대상 예금 금액 기준으로 50% 이상의 예금이 보호*될 것으로 추정
 - * 국내은행, 외국계은행, 신용조합, 농협, 수협 등이 부보 금융회사이며, 거주자/비거주자를 구별하지 않고 보통예금, 정기예금, 개인수표계좌 등의 예금을 보호

● 英國 FSCS, 3개 신용조합 예금자에게 보험금 지급 결정

□ 지난 5월 영국 금융감독청(Financial Services Authority; FSA)은 Corby Community Credit Union 등 3개의 신용조합*에 대해 자본잠식을 이유로 인가 취소

* Ferries Credit Union, Corby Community Credit Union, Fleetwood and District Credit Union

○ 이에 따라 '07.7.31 영국 예금보험기구(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; FSCS)는 지급불능(insolvent)된 3개의 신용조합(Credit Union)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

□ 영국에서 신용조합 예금자에 대한 1인당 보호한도는 31,700 파운드

○ 2,000파운드까지는 예금의 전액을,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90% 보호

□ 이번에 지급불능이 선언된 3개의 신용조합 예금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총액은 약 61만 파운드*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

* Ferries Credit Union 450,000 파운드, Corby Community Credit Union 82,000 파운드, Fleetwood and District Credit Union 78,000 파운드

● 中國 인민은행,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MOU체결

□ 중국 인민은행(人民銀行)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(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; FDIC)는 8월 2일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(MOU)를 체결

○ 동 양해각서에 따라 FDIC는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(銀行監督管理委員會)가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지원

○ 은행의 건전성 규제 등과 관련된 정보 교류 및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

- 중국 정부는 1993년에 금융시스템 개혁법에 관한 국무원(國務院) 결정문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
 - 2005년 9월에 예금보험제도 입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, 2007년 1월에는 인민은행, 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예금보험법 초안 작성 작업에 착수
- MOU 체결에 앞서 Sheila Bair FDIC 의장은 7월 23일 인민은행에서 ‘미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’을 주제로 연설
 - 예금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필요한 핵심요소(key feature)로서 ①법·회계제도의 정비 및 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, ②금융부실의 적기정리를 위한 기금 확보와 금융회사 부실예방에 필요한 상시감시 정보 확보, ③효율적 정리 절차 마련, ④명확한 청산 규정 제정, ⑤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(public awareness) 제고 등을 제시

● 美國 의회, 보험업법 개정 추진

- 최근 美 상원의 Sununu, Johnson 의원(5월)과 하원의 Royce, Bean 하원의원(7월)은 현행 州별 감독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 및 보험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(The National Insurance Act of 2007)을 재발의
 - 동 법안은 2006년에도 발의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가, 이번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재발의한 것임
- 개정안의 주요내용(상원 법안)
 - 재무부(Treasury Department)내에 독립적인 보험감독청(Office of National Insurance)을 설립
 - 보험감독위원장(Commissioner of National Insurance)은 대통령이 임명
 - 보험회사를 미국의 모든 州에서 해당 州의 법률에 구속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전국 보험사업자(National Insurer)와 인가받은 州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지역 보험사업자(State Insurer)로 구분하고 상호간 전환을 자유롭게 허용

- 보험감독위원장은 동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**주보험보호기구(state guaranty association)의 적격성을 심사***

* 심사기준

- ① 주보험보호기구가 지역 보험사업자 뿐 아니라 전국 보험사업자의 가입도 허용하는지 여부
- ② 회원 보험사업자의 청산 시 보험계약자에게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에 대해 보호(사망보험금 30만달러, 장기요양 10만달러, 장애보험 30만달러, 연금 수령액(현재가치로 환산)·해약환급금 10만달러 등) 여부
- ③ 전국 보험사업자나 중소형 보험사업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공평한 구성 여부

- **부적격 주보험보호기구(nonqualified associations)가 존재할 경우 보험보호공사(National Insurance Guaranty Corporation)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 제공**

- 보험보호공사는 보험감독위원장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기관(non-profit corporation)으로, 정부기관 또는 정부의 대행기관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거나 차입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
- 또한 보험보호공사의 부모 보험사는 부적격 주보험보호기구가 존재하는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국 보험사업자 또는 주 보험사업자임

- 전국 보험사업자는 자신이 영업하고 있는 모든 주의 보험보호기구에 가입해야 하고, 만약 해당 주의 보험보호기구가 부적격일 경우, **보험보호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**

□ 동 법안에 대해 **美생명보험협회(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; ACLI)** 및 **美보험협회(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; AIA)**는 각 주별로 상이한 보험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**규제 준수 비용(compliance cost)**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성명을 발표

- 반면, 각 주 보험감독당국은 부당 보험료 책정 방지 등 각 주의 **중요 법률이** 획일적 제도로 인해 **무력화**되고, **주 자치권이 침해**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

● 美國 FDIC, 「예금보험제도의 민영화 타당성」 검토 보고서 의회에 제출

□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는 최근 「예금보험제도의 민영화 타당성」*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

* Privatizing Deposit Insurance: Results of the 2006 FDIC Study, *FDIC Quarterly*, 2007, Vol. 1, No. 2

○ 동 보고서는 2005년에 개정된 연방예금보험개혁시행법(Federal Deposit Insurance Reform Conforming Amendments Act of 2005; FDIRCAA)에 따라 작성되어 지난 2월 의회에 보고

□ 주요 검토 내용

○ 공적 예금보험제도 운영 시 예상되는 ①부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등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 심화, ②부보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감독 및 규제 ③시스템 위기 시 발생한 손실의 납세자(taxpayer)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민영화를 일부에서 주장

- 이들은 공적 예금보험제도를 ①상호보증(cross-guarantee) 형태의 민간 예금보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②FDIC를 민간 소유보험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③FDIC의 소유·경영권을 은행으로 이전하고 시장규율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보험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④FDIC를 공적기관으로 유지하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

○ “예금보험제도의 민영화”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책의 타당성 검토

- 도덕적 해이는 어떤 보험이든 내재된 문제로서 운영주체나 지배구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를 민영화 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렵고

· 공적 예금보험제도에서도 자본적정성 규제나 적기시정조치, 차등보험료제 도입 등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

-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대부분은 예금보험제도와는 무관한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부과

- 민간 예금보험제도 하에서도 고위험-고수익(high risk-high return)을 추구하는 부보 금융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여전히 필요
- 또한 시스템 위기 발생 시 민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지는 불명확
- 시스템 위기 발생 시 정부의 개입여부는 예금보험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, 민간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경험적으로 시스템 위기 발생 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*
- * 미국의 경우 80년대 저개발국 외채 위기와 1995년 멕시코 금융위기 시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으며, 90년대 초 북유럽 은행위기와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각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바 있음
- 한편 공적 예금보험제도 하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스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, 현 제도에도 시스템 위기의 판단 및 관련 비용의 국민 전가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
- 민간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시스템 위기 발생 시 FDIC가 부보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질 경우 오히려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
- 과거 민간 예금보험제도 도입 운영 사례 등을 보더라도 “예금보험의 민영화”는 공적 예금보험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음
- 미국의 과거 민간 예금보험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면, 시스템 위기 시 위험 집중(concentration of risk)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민간 예금보험제도가 중단되거나 파산
- 1980년대 저축 대부 조합 위기로 인해 30여개의 민간 예금보험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고, Ohio, Maryland*(1985) 및 Rhode Island**(1991) 州 인가 민간 예금보험기구가 파산

* Ohio와 Maryland 州는 저축대부조합(S&L)을 부보대상으로 하는 민간 예금보험 기금을 1951년과 1962년에 각각 설립

** 40여개의 신용조합(credit union)을 대상으로 1971년에 민간 예금보험기구인 RISDIC(Rhode Island Share and Deposit Indemnity Corporation)를 설립

- 또한 민간 예금보험제도 도입 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민간 자본이 충분히 있을지도 의문

- 정부 보증(government guaranty)이 없는 경우 예금보험료가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*

* 예금보험 보호범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한 채보험료율(정부보증이 없는 시장가격)이 FDIC의 보험료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(Marsh & McLenan, 2001)

- 민간 예금보호기구는 예금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신규 진입을 막고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 은행을 예금보험제도에서 퇴출시키려는 유인이 존재

· 이는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 효율과 안정성(economic stability)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

□ 동 보고서를 통해 FDIC는 1998년 자체 심포지엄(Confidence for the Future: An FDIC Symposium)에서의 검토 결과와 마찬가지로 “예금보험제도의 민영화”가 공적 예금보험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

【예금보험공사 부조사역 육진관 Email: XXXXXXXXXXXXXXXX】